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91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2. 5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위위원장

제안이유

○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, 운영조례 제6조5항 중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, 조례 제정 시 환경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시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.

주요골자

-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의 실시기관 변경
 - 현행 : 환경전문기관
 - 개정 : 전문연구기관

관계법령 :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3항 시행령 6조, 시행령 26조제2항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"환경전문기관"을 "전문연구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소각시설 운영 등) ①~④(생략)</p> <p>⑤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6개월마다 주민이 원하는 <u>환경전문기관</u>에서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, 소각시설 대기공해 배출치가 국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⑥(생략)</p>	<p>제6조(소각시설 운영 등) 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..... <u>전문연구기관</u>..... 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